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 시책 수립〉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45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 시책 수립(안 제22조의6 신설)	2
2. 개정안 부칙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태년 의원 등 15인
2. 발 의 일 : 2025. 12. 23.
3. 회 부 일 : 2025. 1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학교체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현재 문화예술은 단순한 취미나 교양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유대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창의력 등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 문화예술활동 장려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 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Ⅲ. 검토의견

1.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 시책 수립(안 제22조의6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조의6(학교문화예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문화예술교육이 주는 긍정적 가치에 대하여 여러 연구를 통해 논의되어 왔는바, 문화예술교육 속 미적 경험이 창의성 신장에 영향을 주고, 학습몰입, 학습에 대한 흥미, 자기주도적 능력 등에서 효과성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 졌으며, 문제해결 및 질서의식에서도 유의한 결과가 도출

되었음¹⁾.

□ 이렇듯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유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²⁾,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시책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교육기본법」상 국가 등의 시책 수립 사항]

구 분	수립 목적
양성평등의식의 증진	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을 고취하는 교육적 방안 등
학습윤리의 확립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
생명존중의식 함양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
안전사고 예방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
평화적 통일 지향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특수교육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교육 지원
영재교육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사람의 교육

1) 노승환, “문학, 음악, 연극 중심의 중학교 문화예술교육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건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2018.2., pp 33~35

2) 「교육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아교육	유아교육 진흥
직업교육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교육	과학·기술교육 진흥
기후변화환경교육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진로교육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
학교체육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교육의 정보화	정보화교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타인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기준에 관한 교육이 포함)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
학술문화의 진흥	학술문화를 연구·진흥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
교육 관련 통계조사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한 교육 관련 통계조사
보건 및 복지의 증진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 -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
국제교육	-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을 실시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교육기본법」에는 학술문화를 연구·진흥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나³⁾,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육기본법」에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으로 볼 수도 있는데,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는 국가등에게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면서⁴⁾,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3) 「교육기본법」 제24조(학술문화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술문화를 연구·진흥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학생의 문화예술활동 장려와 관련하여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등에게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학교에 학생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⁶⁾
- 이와 같이 현행법 체계하에서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바, 교육제도·운영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교육기본법」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관계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⁷⁾의 개념이 포괄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현행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 관계 법령⁸⁾에서 ‘예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정 법률안과 기존 교육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6)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청소년단체 및 직장의 학생·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청소년단체 및 직장에 학생·청소년·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문화예술)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8) 「교육기본법」 제19조(영재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제1항제7호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5조(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제2호 예술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술교육’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⁹⁾.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시·도교육청>

- (대전·전북·전남교육청)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다수의 관계 법률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는 포괄적 개념으로, 교육 영역을 넘어 사회·산업·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또한 「교육기본법」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 교육 내용과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고 모호해질 우려가 있음.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문화”란 사회 구성원의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정의되어 있어 의미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함. 학교예술교육 영역의 ‘예술’은 학교 교육과정, 관련 교과(음악·미술 등)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개념으로 학교교육의 목적과 범위에 보다 명확하게 부합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의 예술감수성, 심미적 정서, 창의성 함양을 목표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 중, 학교 예술교육의 고유 목표를 고려할 때 개념을 “학교예술”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9) 아울러, 문화의 개념적 정의를 고려할 때, 문화의 교육 내용 및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고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예술교육’으로 명시하는 것이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임.

「문화기본법」 제3조(문화)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 또는 법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3개월, 대통령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6개월,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데¹⁰⁾, 개정안의 경우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려는 것임¹¹⁾.
- ☐ 안 부칙의 취지가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신속한 수립을 위한 것이라면, 부칙에 시책 수립 기한을 명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0)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821

11) 이 방식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또는 법률의 시행이 긴급하거나 단순한 정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822].

문 의 처
02)6788-5186